

학교 규칙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93년 3월 1일
제1차 개정	1999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01년 3월 1일
제3차 개정	2002년 3월 1일
제4차 개정	2004년 3월 1일
제5차 개정	2009년 3월 1일
제6차 개정	2010년 3월 1일
제7차 개정	2013년 3월 1일
제8차 개정	2015년 3월 1일
제9차 개정	2018년 3월 1일
제10차 개정	2020년 3월 1일
제11차 개정	2023년 3월 1일
제12차 개정	2024년 3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광주광역시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 2013.2.5.)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소년원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5조의2(체육 특기자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 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 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 특기 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제5조의3(지체 부자유자의 입학 방법) 교육장은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4.2.17., 2010.6.29.)

제7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1일)
 4.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단기 방학)
 5. 학교장이 정하는 여름, 겨울, 학기말의 휴업일
 6.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일(신설 2006.6.12.)
- ② 제①항제3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①항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지역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수) 학급 수는 교육감의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급배정결과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제9조(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교육감의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배정 결과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정원외로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장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

제10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제10조의2(등교중지)

-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전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6.06.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6.12.)

제10조의3(위탁교육)

- ①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 ② 교육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06.6.12.)

1. 위탁교육 희망학생(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③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 및 가정학습의 징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 혹은 205일 이상, 혹은 190일 이상 중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정한 수업 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반드시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초·중등 교육법 제24조제3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1조의2(학교(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①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② 지침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등교수업에 한하여 가정학습(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최소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4. 학교의‘학교(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

6.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학습 형태: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기타 학교(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등
- ④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규칙으로 정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지필 평가 기간(모든 지필 평가 포함), 고입 원서 작성 기간(전기, 후기 원서 작성 기간) 등
 3.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4. 이 외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 ⑤ 체험학습 불허 사항: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고사)

- ① 모든 교과와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시행하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및 결과의 활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기타 세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3조(수료·졸업)

-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교육장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전·편입학)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며,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의2(귀국학생의 전·편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인 특례 편입학 대상자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② 학년의 결정은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등으로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유예자 및 면제자의 재입학)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편입학서류)

- ①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전학용 재학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제21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교 전학)

-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위 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전입학 배정을 허가 받아야 한다.

제8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23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법 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학부모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2001.3.2., 2004.2.17., 2005.9.29.)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

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의2(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7조의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선정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

- 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중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중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선정 절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제29조의1(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의2(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9조의3(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 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9조의4(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 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29조의5(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의6(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29조의7(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0조(환원 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1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① 신청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학업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7.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고등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고등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⑤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2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 ①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③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3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 ①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교사, 교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 ②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 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4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3.18.)

제35조(포상) 학교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3.4.2.)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 ② 위의 징계 중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제37조의2(학생회 조직 및 운영)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2013.4.2.)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삭제)~~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삭제)~~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역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② 회의개최 및 의결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4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41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5장 학칙개정 절차

제42조(학칙제정·개정절차)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3. 18.)

제42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개정안이 결정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42조의3(시행) 개정된 학칙은 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공포·시행한다.

제16장 기타 법령 사항

제43조(기타사항)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24. 3. 25. 일부 개정)

- ①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학칙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⑬ 본 학칙은 2024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통과된 후 시행한다.